

GENERAL ORDER



Title: 물리력 사용 심의위원회(Use of Force Review Board)

No: GO-PER-901.09

DISTRICT OF COLUMBIA

I.	Background	Page	1
II.	Policy	Page	1
III.	Definitions	Page	2
IV.	Regulations	Page	2
V.	Procedures	Page	3
V.A	Organization	Page	3
V.B	Operation	Page	4
V.C	Review Process	Page	5
V.D	Finding and Recommendations	Page	5
V.E	Referral of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Page	7
V.F	Internal Affairs Bureau	Page	8
V.G	Office of Risk Management	Page	9
VI.	Cross References	Page	9

I. 배경(Background)

이 훈령의 목적은 물리력사용 심의 위원회(Use of Force Review Board)를 규정하는 것이다. 물리력사용 심의 위원회는 주로 심각한 물리력 사용에 관한 조사를 중점으로 다룬다. 그 밖의 물리력 사용에 관한 조사는 해당경찰관 지휘부서의 지휘관이 검토를 하고 내사국(IAB)의 차장(Assistant Chief)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휘관이 결론을 내린다. 내사국(IAB, Internal Affairs Bureau)내의 내사과(IAD, Internal Affairs Division)는 해당경찰관 부서지휘관이 수행한 조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내사국(IAB, Internal Affairs Bureau)의 차장(Assistant Chief)에게 해당 경찰 지휘부(a chain of command case)가 수행한 조사가 물리력 심의 위원회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권고 할 수 있다.

II. 정책(Policy)

MPD 정책은 물리력사용 사건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적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물리력 사용 심의위원회는 내사과(IAD)가 진행한 모든 물리력 사용을 심의하며, 내사국(IAB)의 차장이 물리력사용 심의위원회에 전달한 해당 경찰관 지휘부 조사 및 사망이 발생한 모든 차량 추격 등을 심의해야 한다.

III. 정의(Definitions)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지정된 의미를 갖는다:

1. 위원회(Board) - 물리력사용 심의위원회
2. 직원(Member) - MPD 경찰관 또는 행정관 및 MPD 자율방범대(MPD Reserve Corps)
3.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 다음을 포함하며 MPD가 행한 치명적이며 덜 치명적인 행위들
 - a. 사격 훈련장 및 동물에게 행하는 발사를 제외한 모든 총기 발사
 - b. 병원 입원을 필요로 하는 골절 및 부상을 일으키는 물리력
 - c. 경찰 장구(경찰봉, 나이트스틱)로 머리 강타
 - d. 의식 불명, 사망위험, 심각한 신체손상, 신체 또는 장기 기능 일부의 장애 또는 상해를 일으키는 모든 물리력;
 - e.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모든 물리력
 - f. MPD 경찰관이 사람을 무는 모든 사건
4. 물리력(Use of force) - 경찰의 명령에 따르도록 물리력 대상자를 설득하거나 영향을 주는데 사용되는 신체적 접촉. 부상이나 통증 호소를 일으키지 않는 저항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갑 채우기 또는 손 제압 절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IV. 규정(Regulations)

- A. 물리력사용 심의 위원회는 내사과(IAD)가 진행한 모든 물리력 사용 조사; 동물에게 행한 총기발사; 해당 경찰관 지휘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내사국(IAB)의 차장 (Assistant Chief)이 심의 위원회에 전달한 물리력 사용 조사; 사망이 발생한 모든 차량 추격 등을 심의해야 한다.
- B. 물리력 심의 위원회는 경찰관이 심의에 참석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있으며, 위원회 임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MPD의 서류를 입수할 권한이 있다.
- C. 물리력 심의 위원회는 물리력 사용 사건에서 탁월함을 보인 경찰관에게 표창을 추천할 권한이 있다.

- D. 물리력 심의 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한 모든 사건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불리한 조치를 권고할 권한이 있으며, 또한 비징계 조치(non-disciplinary action)를 권고할 수 있다.
- E. 내사과(IAD)는 해당경찰관 소속 지휘부가 조사한 모든 물리력 사건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내사국(IAB)의 차장(Assistant Chief)에게 해당경찰관 지휘부에서 검토한 사건이 물리력 심의 위원회에서 재심의 되어야 한다고 권고할 수 있다.
- F. 내사국(IAB)은 물리력 심의 위원회의 행정업무에 책임이 있다.
- G. 내사국(IAB)의 차장(Assistant Chief)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1. 모든 물리력사용 사건 조사에 마감일을 정하고 GO-PER-201.22(소방 및 경찰 징계 절차 법(2004), Fire and Police Disciplinary Action Procedure Act of 2004))에 따라 해당 조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 2. 자신의 재량에 따라 물리력사용 심의 위원회에 사건을 전달한다.

V. 절차(Procedures)

A. 조직(Organization)

- 1. 물리력사용 심의 위원회는 다음의 선출직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a. 경찰국장(Chief of Police)이 선정한 1인의 차장(Assistant Chief)이 위원회 의장을 한다.
 - b.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Bureau)내에 있는 특수작전처(Special Operations Division)의 지휘관(Commanding Official)
 - c. 조사국(Investigative Services Bureau)내에 있는 범죄조사부(Criminal Investigations Division)의 지휘관(Commanding Official)
 - d. DC 경찰 아카데미(Metropolitan Police Academy)의 지휘관(Commanding Official)
 - e. 교통순찰국(PSB, Patrol Services Bureau)에 파견되어 있는 1인의 경무관(Commander) 또는 조사관(Inspector)
 - (1) 교통순찰국(PSB, Patrol Services Bureau)의 차장(Assistant Chief)은 경무관(Commander)과 조사관(Inspector)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순환 근무 스케줄을 결정해야 한다.
 - (2) 경무관(Commander)과 조사관(Inspector)은 최소 1년 동안 위원회 업무를 해야 한다.

- f. 채용부서(Recruiting Division)의 지휘관(Commanding Official)
- g. 법원 연락 부서(Court Liaison Division)의 지휘관(Commanding Official)

2. 물리력사용 심의 위원회는 또한 다음의 비선출직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a. 경찰 고충처리 사무소(Office of Police Complaints)의 최고 부서장(Executive Director)
- b. MPD 노동 위원회 내 경찰 공제 조합(Fraternal Order of Police)과 DC정부 내 MPD 간의 현재 노동 협약에 따라 경찰 공제 조합이 선출한 1인의 위원

B. 운영(Operation)

1.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물리력사용 심의위원회는 매달 2회 모여 물리력 사건을 심의해야 한다.
2. 물리력사용 심의 위원회 의장은 회의 날짜, 시간, 장소를 정해야 한다.
3. 내사국(IAB) 출신 위원이 행정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4. 매 위원회 정족수는 4명이어야 한다.
5. 위원들은 대리자를 위원회 심의에 보내서는 안 된다.
6. 오직 경찰국장(Chief of Police)만 위원회 심의에 결석할 수 있다.
7. 위원회 행정관은 위원들의 출석을 문서화해야 한다. 회의록에 허가 받은 불참 및 미허가 받은 불참 둘 다 정식으로 기록해야 한다.
8. 물리력사용 심의위원회는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소방 및 경찰 징계 절차 법 (2004)(Fire and Police Disciplinary Action Procedure Act of 2004) [GO-PER-201.22, Fire and Police Disciplinary Action Procedure Act of 2004) 에서 설정한 일정 내에 각 사건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9. 물리력사용 심의위원회 의장은 신입 위원들에게 예비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예비 교육 내용은 물리력 심의 위원회를 관장하는 MPD 정책 검토, 위원회 위원 및 내사과 (IAD)의 책임, 위원회 운영의 일반적 개관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 심의 과정(Review Process)

1. 물리력사용 심의위원회는 물리력을 사용한 해당 경찰(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물리력 사건과 관련 있는 경찰(들)의 모든 행위도 심의해야 한다. 물리력 사용까지

이러한 행위가 현장상황을 고려할 때 권고될만한 행위인지 확인하고 그리고/또는 해당 물리력 사용이 교육을 통해 시정 가능한 조치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적절하다면 훈련을 권고해야 한다.

2. 물리력사용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관련해 물리력 사건을 심의해야 한다.

a. MPD 정책, 절차, 훈련 및 교육을 준수 했는지 여부

b. 해당 경찰관이 사용한 전술의 적절성 여부

c. 위기 관리 문제

d. 관련 MPD 교육의 적절성 여부

e. 사건에 사용된 물리력 수준의 적절성 여부

3. 위원회 심의 과정의 일부로서, 물리력사용 심의위원회는 “의사결정 포인트 매트릭스 분석(Decision Point Matrix Analysis)”을 준비해야 하며 이 분석을 기록에 포함해야 한다.

4. 물리력사용 심의위원회는 경찰국장(Chief of Police)에게 물리력사용 조사 프로토콜, 물리력 사용 조사 표준, 교육 훈련 개선, MPD 정책 및 절차의 수정을 권고 할 수 있다.

D. 심의 결과 및 권고사항(Findings and Recommendations)

1. 각 사건을 평가한 후, 위원회는 각각의 평가 결과 및 권고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조사 권고사항(investigative recommendation)을 확정하거나 기각해야 한다.

2. 물리력 사용 심의위원회는 GO-RAR-901.08(Use of Force Investigations)에 따라 물리력 사건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a. 정당함, MPD 정책과 일치(Justified, Within Department Policy) - 물리력 사용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해당 경찰은 MPD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다.

b. 정당함, MPD 정책 위반(Justified, Policy Violation) - 물리력 사용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해당 경찰은 MPD 정책을 위반했다.

c. 정당함, 전략적 개선 사항 필요(Justified, Tactical Improvement Opportunity) - 물리력 사용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해당 경찰은 MPD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결과 전략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물리력 사용에 대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 d. 정당하지 않음, MPD 정책과 불일치(Not Justified, Not Within Department Policy) - 물리력 사용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해당 경찰은 MPD 정책을 위반했다.
3. 물리력사용 심의위원회는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사용에 대한 물리력 대상자의 주장 및 기타 경찰의 위법행위(misconduct)에 대한 조사결과를 GO-RAR-901.08(Use of Force Investigations)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 a. 증거 미발견(Unfounded) -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으나 제기된 과도한 물리력 사용 사건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
 - b. 증거 존재(Sustained) -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증거의 우세함에 의해 물리력 대상자의 주장이 뒷받침 된다.
 - c. 증거 부족(Insufficient facts) - 물리력 대상자가 주장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 d. 책임 없음(exonerated) - 증거의 우세함은 물리력 대상자가 주장하는 경찰 행위가 발생했음을 보여주지만, 경찰은 MPD 정책, 절차 및 훈련을 위반하지 않았다.
 4. 물리력사용 심의위원회는 차량 추격에 대한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 a. 정당함(Justified) - 조사 결과 MPD 정책을 준수했다.
 - b. 정당하지 않음(Not Justified) - 조사 결과 MPD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
 5. 물리력사용 심의위원회가 추가 질문이 있거나 또는 조사가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사과(IAD)를 위원들 앞에 출석하도록 강제 할 수 있고, 내사과(IAD)가 사건을 조사하도록 재배정할 수 있고, 내사과(IAD)에 후속조치를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낼 수 있으며,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건을 조사단(investigating unit)에 돌려보낼 수 있다.
 6. 조사를 완료하고 수정하도록 내사과(IAD) 또는 조사단에 돌려보낸 모든 사건은 위원회가 재평가하도록 수령 후 5일 이내에 위원회 의장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
 7. 물리력사용 심의 위원회의 조사결과 또는 권고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는 위원은 소수의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E. 조사 결과 및 권고사항 전달(Referral of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1. 물리력사용 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 경찰의 물리력 사용 행위가 인정받을 만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경찰관의 지휘관 또는 MPD 포상 위원회 위원장에게

적절한 표창 권고를 한다.

2. 해당하는 경우, 물리력 위원회 의장은 MPD 경찰 아카데미의 지휘관(commanding officer)에게 MPD 전 직원 뿐만 아니라 해당 경찰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
3. 물리력사용 심의위원회 조사결과, MPD 정책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을 통합지원국(Corporate Support Bureau)내에 있는 징계심의부서(DRD, Disciplinary review Division)의 부서장(director)에게 전달해야한다.
4. 징계심의부서(DRD)가 물리력사용 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 권고 통지를 받은 경우, 징계심의부서(DRD)의 부서장(director)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15일 내에 조치를 취했다는 서면보고서를 물리력 사용 심의위원회에 다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취해진 조치와 함께 기타 실행된 조치에 대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5. 내사국(IAB)의 지원을 받는 물리력 사용 심의위원회는 물리력 사용의 패턴(pattern), 문제점 그리고/또는 쟁점사항등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물리력 사용 사건에 대한 연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매년 2월 15일까지 경찰국장(Chief of Police)에게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6. 물리력사용 심의 과정 중 언제라도, 내사과(IAD)의 조사가 미진하거나 또는 적시성(timeliness)면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물리력 사용 심의위원회 의장은 내사과(IAD)의 지휘관(Commanding Officer) 및 내사국(IAB)의 차장(Assistant Chief)에게 통보해야 한다.

F. 내사국(Internal Affairs Bureau)

1. 내사국(IAB)의 차장(Assistant Chief)은 물리력사용 심의위원회 행정관 업무를 담당할 위원을 지정해야 한다.
2. 물리력사용 심의위원회 행정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내사국(IAB) 직원과 협의하여 물리력 사용 심의위원회가 검토 예정인 조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 b. GO-PER-201.22(소방 및 경찰 징계 절차법, Fire and Police Disciplinary Action Procedure Act of 2004)에 따라, 90일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할 사건은 내무부(IAD)의 조사 진행 상황을 추적해 내사국(IAB)의 차장(Assistant Chief)에게 통보한다.

- c. 물리력사용 심의위원회 의장이 검토하고 승인할 안건을 준비한다.
 - d. 물리력사용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 날짜, 시간, 장소를 통보한다.
 - e. 논의해야 할 모든 관련 보고서, 기록 및 증거를 제공한다.
 - f. 해당 경찰 및 관리자(supervisor)의 과거 관련 정보를 물리력사용 심의위원회가 징계 권고와 관련해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g. 물리력 사용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심의의 과정에서, 해당하는 MPD 훈령 및/또는 교육훈련 계획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 h.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을 포함해 결론을 기록한 위원회 회의록(proceedings) 요약본을 준비한다.
 - i. MPD의 해당 부서에게 전달할 물리력 사용 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권고사항 보고서를 준비한다.
 - j. 해당 경찰관, 관리자(supervisor), 지휘관(commanding officials)에게 물리력 사용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보한다.
 - k. 물리력 사용 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권고사항이 불리한 조치와 시정조치인 경우 그 기록을 보관한다.
 - l. 위원회의 연간 보고서 준비를 지원한다.
 - m. 의제(agenda), 의사결정 포인트 매트릭스(decision point matrices), 회의 요약서, 서신 및 연간 보고서를 포함해 위원회 활동에 대한 과거 기록을 보관한다.
 - n. 내사국(IAB)의 차장(Assistant Chief)이 배정한 물리력 사용 심의위원회의 기타 행정 업무를 담당 한다.
3. 내사국(IAB)은 모든 물리력 사건의 통계 정보를 물리력 사용 심의위원회가 참조하도록 한다.

G. 위기관리실(ORM, Office of Risk Management)

- 1. 위기관리실(ORM, Office of Risk Management)은 물리력사용 심의위원회에 제출이 보류중인 사건의 적시성(timeliness)을 검토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 2. 정기 감사의 주요 목적은 GO-PER-201.22(소방 및 경찰 징계 절차법, Fire and Police Disciplinary Action Procedure Act of 2004)에 따라 90일 기한을

지키지 못할 사건을 확인하고 문서화하기 위함이다.

VI. 상호 참조(Cross References)

A. GO-PER-201.22(Fire and Police Disciplinary Action Procedure Act of 2004)

B. GO-RAR-901.08(Use of Force Investigations)